

##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 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1998-521호 1998. 11. 20

### 개 정 이 유

1998년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사업을 시행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추징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자의적 판단이 없도록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 주 요 골 자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을 승인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의 기간내에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면 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 사회·경제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주택회보